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행위에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추가〉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에 관한 논의	3
3. 스토킹행위에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추가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5. 1. 6.
3. 회 부 일: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 2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서성거리는 행위’와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u>지켜보는 행위</u>	나. ----- ----- ----- ----- <u>지켜보거나 서성거리는 행위</u>
다. ~ 사. (생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아. 기타 그 밖의 행위</u>

2.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에 관한 논의

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제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 스토킹처벌법은 총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²⁾ 동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리 절차 및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1~\$2)	총 칙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등 용어의 정의
제2장 (\$3~\$17-4)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 절차	스토킹범죄의 신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제3장 (\$18~\$20)	벌 칙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강명령의 병과 등

1) 스토킹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총 3장 21조로 시행되었으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 제21조가 2023년 7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 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그 지속·반복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행위임.

○ 동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그 동거인, 가족 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등에게 일정한 물건 등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제2조제1호).

동법 제2조제1호는 스토킹 행위를 행위의 대상과 태양 등을 기준으로 하여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①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에 행위자가 직접 접근하는 행위(가목·나목), ②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에 물건 등을 전달시키는 행위(다목·라목), ③ 상대방등의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 및 ④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럼 가장하는 행위(바목·사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주요 내용
가목·나목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에 대한 <u>행위자 자신의 접근</u>
다목·라목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에 대한 <u>물건 등의 전달</u>
마목	상대방등의 주거 등에 놓인 <u>물건 등의 훼손</u>
바목·사목	상대방등의 <u>정보 무단 이용</u>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이때 스토킹행위의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를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됨(제2조제2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러한 표현은, 반복적이지는 않더라도 1회의 기회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일정 시간 이어져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³⁾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대상이 동일인이 아니라도 일련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⁴⁾

□ 한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음.

- 스토킹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장소적 접근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 특히 협박, 주거침입 등과 경합할 수 있음.⁵⁾⁶⁾

3) 제21대국회 제385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1. 3. 15.), 7-13.

4) 제21대국회 제403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2. 20.), 41-43.

5) 「형법」상 협박의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이해됨.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6) 주거침입의 경우 장소적인 접근을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경합할 수 있는 주요한 범죄로 이해됨.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범죄의 재판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2024), 12-13.

- 스토킹 행위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제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이 있음.⁷⁾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다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지속성과 반복성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므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반드시 유사 범죄 성립의 충분조건은 아님.

7)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등은 본래 스토킹 행위를 규율하고자 신설되었던 것임.

< 스토킹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른 유사 범죄 간 비교 >

구 분		스토킹범죄	유사 범죄
접근 등	근거법률	스토킹처벌법(§2 1호 가목·나목)	경범죄 처벌법(§3① 41호)
	기타요건	◦ 상대의 <u>명·묵시적 의사</u>에 반(反) ◦ <u>지속성 또는 반복성</u> ◦ <u>불안감 또는 공포심</u> 야기	◦ 상대의 <u>명시적 의사</u>에 반(反) ◦ <u>반복성</u>
	법정형	<u>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u>	<u>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科料)</u>
전화 등*	근거법률	스토킹처벌법(§2 1호 다목)	경범죄 처벌법(§3① 40호)
	기타요건	◦ 상대의 <u>명·묵시적 의사</u>에 반(反) ◦ <u>지속성 또는 반복성</u> ◦ <u>불안감 또는 공포심</u> 야기	◦ <u>반복성</u>
	법정형	<u>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u>	<u>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科料)</u>
영상 전달 등*	근거법률	스토킹처벌법(§2 1호 다목)	정보통신망법(§74① 3호)
	기타요건	◦ 상대의 <u>명·묵시적 의사</u>에 반(反) ◦ <u>지속성 또는 반복성</u> ◦ <u>불안감 또는 공포심</u> 야기	◦ <u>반복성</u> ◦ <u>불안감 또는 공포심</u> 야기
	법정형	<u>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u>	<u>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u>

* 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동일하게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 외에 잠재적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고 있음.⁸⁾

○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수강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19조),⁹⁾ 잠재적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도 인정됨(제3조 등).¹⁰⁾

8) 한편, 동법 외에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9) 스토킹처벌법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 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② ~ ⑥ (생략)

10)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생략)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

구 분		요 건	내 용
범죄 전 (피해자 보호조치)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실행 중	스토킹행위 제지, 범죄수사, 보호조치 요청절차 안내 등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우려 및 긴급성	직접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조사·심리에 필요	직접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범죄 후	형사처벌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안처분	스토킹범죄	200시간 내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에서도 이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함.

○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스토킹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 있는 스토킹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이므로, 스토킹행위 자체에 대하여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제3조 등).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이와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등은 스토킹처벌법처럼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각 법률은 모두 가장 앞 단계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응급조치에서부터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상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등).¹¹⁾

11)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⑧ (생략)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나. 스토킹행위의 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

□ 스토킹처벌법은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대두됨에 따라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21. 부터 시행되었음.¹²⁾

○ 종래 스토킹행위는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형법」의 협박·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범죄로 규율되었으나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스토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규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이 추가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이 과정에서 추가된 범죄가 법률 제11401호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법률(2012. 3. 21. 개정)로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등임.¹³⁾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 전반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음.

12)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글, 16-21.

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3947호) 심사보고서 (2011), 9-10.

□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이후로도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규율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므로,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3. 7. 11.에는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에게 음향·영상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¹⁴⁾

< 2023. 7. 11. 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 변화 >

구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u>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u>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u> 가. <u>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u>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u>상대방등의</u>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14) 법률 제19518호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2023. 7. 11. 개정).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은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에게 음향·영상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있었음. 그러나 상대방 등이 수신하지 않은 전화의 경우를 이에 따라 음향 등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지 논란이 있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규율할 수 없었으므로, 이상의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율하기 위하여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구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u>도달하게 하는 행위</u>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u><신 설></u> <u><신 설></u>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u>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u> 라. <u>상대방등에게</u>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u>상대방등의</u>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u>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u>개인정보</u>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u>개인위치정보</u>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u>

-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 등 행위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등을 위하여 스토킹행위로 추가하게 되었음.¹⁵⁾

□ 최근에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이러한 의견은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유형의 행위도 영국, 일본, 독일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스토킹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

○ 영국은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괴롭힘방지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스토킹행위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행위(loitering)가 포함됨.

- 「괴롭힘방지법」은 제1조에서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2A조에서 괴롭힘 금지에 위배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¹⁶⁾

15) 제21대국회 제406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5. 22.), 16-18.

16) 영국 「괴롭힘방지법」(2022. 4. 28. 개정, 국회도서관 번역본)

제1조(괴롭힘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b)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행위

(1A) ~ (3) (생략)

제2A조(스토킹 범죄)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는다.

(a) 제1조(1)에 위배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을 것

(b)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것

(2) 제(1)항(b)(및 제4A조(1)(a))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 해당한다.

(a)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할 것

(b) 이에 포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스토킹과 관련된 것일 것

(c) 일련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가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함을 알거나 알았어야 했을 것

(3) 다음 각 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예이다.

(a)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b) 어떠한 수단으로든 특정인과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괴롭힘방지법」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예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일본은 「ストーカー行爲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스토크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상응하는 ‘쫓아다니기등’과 ‘스토크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쫓아다니기등에는 피해자의 주거 등 일정한 장소에서 함부로 서성거리는 행위(みだりにうろつくこと)가 포함됨.

- 일본의 「스토크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크행위규제법”)은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처럼 쫓아다니기등의 행위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를 반복할 경우 처벌 대상인 스토크행위가 되도록 하고 있음(제2조).¹⁷⁾

-
- (c)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를 출판하는 행위
 - (i)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
 - (ii) 특정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
 - (d)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전자 통신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
 - (e) 특정 장소(공공 장소나 사유지를 불문한다)를 배회하는 행위
 - (g) 특정인을 지켜보거나 훑쳐보는 행위
 - (4) (생략)

17) 일본 스토크행위규제법(2021. 5. 26. 개정, 국회도서관 번역본)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쫓아다니기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 감정, 그 밖의 호의(好意) 감정 또는 그것이 못 채워진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인, 그 배우자, 직계, 동거 친족, 그 밖의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쫓아다니고, 잠복하고, 진로를 방해하고, 주거, 근무처, 학교 및 기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또는 통상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의 부근에서 감시하고 주거 등에 들어닥치거나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
2.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향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의 의무가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
4.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보이는 것

○ 독일은 「Strafgesetzbuch」(형법)에서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은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열거하되, 포괄조항을 둠으로써 열거된 유형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아니한 유형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 「형법」 제238조는 찾아가는 행위,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행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 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⁸⁾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절당했음에도 연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서를 송부하고, 팩시밀리 장치를 이용해서 송신하거나 전자메일의 송신 등을 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현저히 불쾌,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7. 명예를 해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8.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문서, 도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관련된 기록 매체, 그 밖의 물건을 송부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전자적 기록, 그 밖의 기록을 송신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② 전항 제5호의 “전자메일의 송신 등”이란 다음 각 호 행위(전화를 거는 것 및 팩시밀리 장치를 이용해서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전자메일, 그 밖의 수신을 하는 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을 송신하는 것

2. 전호 외에 특정 개인이 입력하는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것에 부수하여, 제3자가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것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스토크 행위”란 동일한 자에게 쫓아다니기등(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5호(전자 메일의 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행위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가 해쳐지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해쳐지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18) 독일 「형법」(2022. 7. 11. 개정, 국회도서관 번역본)

제238조(스토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무단으로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적지 않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해당인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로 찾아가는 행위

2. 통신수단이나 다른 대화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개인정보를 남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a) 그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행위

b)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적 불가침,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5.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친족 또는 그 사람과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제202a조, 제 202b조

< 주요 국가의 스토킹행위 유형 >

구 분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영국	◦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예시 -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 특정인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 등을 출판하는 행위 -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행위 - 특정인 소유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 특정인을 지켜보거나 훑쳐보는 행위
일본	◦ ‘쫓아다니기등’(스토킹행위)의 내용을 열거 - 쫓아다니기, 잠복, 진로방해, 주거 등을 감시, 주거 등에 들이닥치기, 주거 등의 부근에서 서성거리기 -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 면회·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의 요구 -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 - 연속한 전화 걸기, 문서 송부, 전자메일 송신 등 - 오물, 동물 사체 등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의 송부 등 - 명예를 해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 문서, 전자기록 송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독일	◦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열거 - 찾아가기 - 통신수단이나 제3자 등을 통하여 접촉 시도 - 상품·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3자의 접촉을 부추기는 등 개인정보 남용 -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자유의 침해 위협 -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정보 무단 탐지·입수 -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이미지 공개 등 -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의 저작물로 가장하여 공개 등 - 그 밖에 이상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제202c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6.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친족 또는 그 사람과 가까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퍼뜨리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7.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대중의 평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제11조제3항)을 개인 저작물을 가장하여 퍼뜨리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2) · (3) (생략)

○ 그 밖에 미국 등 국가에서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은 연방과 주(州)의 관할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방법과 각 주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을 입법함에 참고자료가 되는 모범법(Model Code)도 스토킹 범죄의 행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방법은 살해, 상해, 괴롭힘, 협박 또는 그러한 목적의 감시를 위한 행위 중 생명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惹起)하거나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보다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음.¹⁹⁾²⁰⁾

19)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는 스토킹범죄를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을 뿐, 더 상세한 행위 태양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8 U.S.C. §2261A Stalking

Whoever -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i) that person;

(ii)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iii)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iv) the pet, service animal, emotional support animal, or horse of that person;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or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 「Model Stalking Code」(모범스토킹법)도 두 번 이상 이루어진 행위일 경우 관찰, 감시, 위협 또는 연락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형의 행위라도 피해자 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²¹⁾²²⁾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person, a pet, a service animal, an emotional support animal, or a horse described in clause (i), (ii), (iii), or (iv)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b) or section 2261B, as the case may be.

20) 같은 취지로, 염윤희, 스토킹 규제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미국 법체계와 시사점: 뉴욕주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2024. 9.), 159-162.

21) 모범법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나 각 주의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2007년의 「모범스토킹법」은 1993년 작성된 「Model Anti-Stalking Code」(모범스토킹방지법)를 개정한 것임.

22) Model Stalking Code(2007)

SECTION TWO: OFFENSE

Any person who purposefully engages in a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and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course of conduc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 (a)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a third person; or
- (b) suffer other emotional distress is guilty of stalking.

SECTION THREE: DEFINITIONS

As used in this Model Statute:

- (a) “Course of conduct” means two or more a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s in which the stalker directly, indirectly, or through third parties, by any action, method, device, or means, follows, monitors, observes, surveils, threatens, or communicates to or about, a person, or interferes with a person’s property.
- (b) “Emotional distress” means significant mental suffering or distress that may, bu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medical or other professional treatment or counseling.
- (c) “Reasonable person” means a reasonable person in the victim’s circumstances.

-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에도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태양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과 같이 포괄적·보충적 성격의 행위도 추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구체적인 태양의 행위 중에서는, 제3자의 접근·감시 등 제3자에 의한 행위, 특정 장소에서 서성거리는 행위, 상대방의 반려동물 등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추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²³⁾
- 한편, 포괄적 성격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스토킹 행위의 다양한 태양을 모두 기술(記述)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도 스토킹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²⁴⁾ 이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²⁵⁾

23) 제3자의 행위와 서성거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글, 378-381.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윤정숙 등, 스토킹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400-401.

24) 윤정숙 등, 앞의 글, 378-379. 고명수,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독일형법 제238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 통권 제686호 (2002. 3.), 36-37.

25) 황순현, 앞의 글, 593-594. 참고로,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포괄적인 성격의 스토킹행위 유형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임.

□ 스토킹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꾸준히 제안되어 왔으며, 제22대 국회에도 총 3건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음.

○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전에 제안된 법률안 중에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법률안이 다수 있었으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괄조항은 제외하고 각 유형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음.²⁶⁾

<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법률안별 스토킹행위 규율 형식 >

의안번호 (제안)	제안일	법률안 내용		비고
		포괄조항	스토킹행위 주요 유형	
2100036 (정춘숙)	20.06.01	○	◦ 접근·미행,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개인정보를 이용한 물건·서비스 신청, 밀접한 사람의 생명·안전 침해로 위협 등 ◦ <u>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u>	대안 반영 폐기
2100050 (남인순)	20.06.01	×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영상·그림 등 전송, 피해자나 밀접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위협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 침해 등	대안 반영 폐기
2101415 (김영식)	20.07.03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녹화, 촬영물·복제물 반포·판매, 반포 목적 촬영물 편집·가공 등	대안 반영 폐기
2101738 (임호선)	20.07.09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등 ◦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 반영 폐기
2101934 (노웅래)	20.07.14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등 ◦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 반영 폐기
2103278 (황운하)	20.08.25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등 ◦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 반영 폐기
2104200 (서범수)	20.09.24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밀접한 사람의 생명·안전 침해로 위협 등 ◦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 반영 폐기

26) 법률 제18083호 스토킹처벌법(2021. 4. 20. 제정).

의안번호 (제안)	제안일	법률안 내용		비고
		포괄조항	스토킹행위 주요 유형	
2106860 (박주민)	20.12.23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등	대안 반영 폐기
2107067 (정부)	20.12.30	×	◦ 접근·진로방해, 지켜보기·기다리기, 말·글·음향·물건 등 도달 등	대안 반영 폐기
2108321 (장혜영)	21.02.25	×	◦ 접근·미행, 지켜보기·서있기, 영상·그림 등 전송, 개인 정보를 이용한 물건·서비스 신청, 가까운 사람의 안전 위협으로 자유로운 생활형성 침해 등	대안 반영 폐기

주: 밑줄은 포괄적 성격의 스톱킹 행위

* ‘자유로운 생활형성 침해 행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

○ 법률 제정 이후에도 포괄조항 또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스톱킹 행위에 추가가 시도되고 있음.

제21대국회에서는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 등 행위가 2023. 7. 11. 법률 개정에 따라 스톱킹행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음. 그 밖에도 포괄조항을 추가하려는 법률안, 반려동물의 생명 침해 등을 추가하려는 법률안 등이 제안되었는데, 포괄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반려동물 생명 침해 등은 「동물학대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현행법 제2조제1호 마목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여 법률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 스톱킹행위 유형 확대 관련 법률안(제21대국회) >

의안번호 (제안)	제안일	추가 대상 스톱킹행위	비고
2111800 (김상희)	21.07.2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배포·게시 등	대안반영 폐기
2117508 (소병철)	22.09.23	◦ 개인정보 및 사생활정보의 수집·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 등	대안반영 폐기

의안번호 (제안)	제안일	추가 대상 스토킹행위	비고
2117908 (장혜영)	22.10.25	- 강요, 감시 및 명예훼손 사실 전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안전 위협으로 자유로운 생활형성 침해 등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반영 폐기
2118139 (권인숙)	22.11.07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가공·편집·배포·게시 등 - 반려동물의 생명 침해 또는 상해	대안반영 폐기
2118644 (정춘숙)	22.12.0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가공·편집·배포·게시 등 <u>그 밖에 각 유형에 준하는 행위</u>	대안반영 폐기
2118857 (이성만)	22.12.09	글·음향·물건 등의 도달 시도	대안반영 폐기
2118933 (홍정민)	22.12.1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가공·편집·배포·게시 등	대안반영 폐기
2120039 (정부)	23.02.1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및 그 편집·가공 정보의 배포·게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 사칭	대안반영 폐기

주: 밑줄은 포괄적 성격의 스토킹 행위

○ 제22대국회의 경우 2025년 9월 현재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본 개정안 외의 법률안은 각각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등 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스토킹행위 유형 확대 관련 법률안(제22대국회) >

의안번호 (제안)	제안일	추가 대상 스토킹행위	비고
2207256 (박덕흠)	25.01.06	- 서성거리는 행위 <u>기타 그 밖의 행위</u>	위원회 계류 중
2207632 (김남희)	25.01.20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살해 또는 그 위협	위원회 계류 중
2210951 (최기상)	25.06.19	감시·폭행·협박·강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제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교제폭력	위원회 계류 중

주: 밑줄은 포괄적 성격의 스토킹 행위

3. 스토킹 행위에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추가

가. 검토의견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²⁷⁾
- 다만, 범죄는 사회적 가치 내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재인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되어야 하며,²⁸⁾ 형벌권 행사의 예측가능성·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처벌 대상인 행위와 형벌은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명확성의 원칙),²⁹⁾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³⁰⁾

27)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28) 헌법재판소 2023. 9. 26. 2020헌마1724·1733(병합) 등.

2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30)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68 등.

□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는 그 지속성·반복성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스톱킹범죄와 같은 행위이므로, 입법에 있어서도 스톱킹범죄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각 내용별로 범죄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안은 스톱킹행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에 새로운 유형의 스톱킹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행위가 이미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행법에서는 규율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범죄화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이 검토되어야 함.

1) 안 제2조제1호 나목: 서성거리는 행위

□ 안 제2조제1호 나목은 영국과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취지라고 이해됨.³¹⁾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자의 직접적인 접근 행위 중에서 장소를 기준으로 한 경우를 제2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와 지켜보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스토킹행위자의 장소적인 접근이 있음에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는, 상대방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주거의 부근 등에서 서성거리는 행위 등이 거론되고 있음.³²⁾

31)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배회하는 행위(loitering in any place)를, 일본의 경우 피해자 등의 주거 등에서 함부로 서성거리는 행위(住居等の付近をみだりにうろつくこと)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있음(영국 「괴롭힘방지법」 제2A조, 일본 스토킹행위규제법 제2조).

32)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을 차량으로 배회한 것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로 볼 증거가 없고, 지켜보는 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다리는 행위도 아니라고 하면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219·2022고합273(병합)·2022고합328(병합)·2022고합464(병합) 판결.

□ 현행 제2조제1호 나목은 스토킹행위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기다리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동 규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이 스토킹행위자와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스토킹행위자가 한 장소에 정지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됨.³³⁾ 따라서 상대방등이 없음을 알고 그 주거의 부근 등에서 서성거리는 행위는 많은 경우 ‘기다리는 행위’로 포섭될 것임.

- 상대방등의 주거 내지 그 부근임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있었 으면서도 상대방등이 올 것을 감수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행위자가 상대방등이 없음을 알고 있고 상대방등이 올 것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 주거의 부근 등에서 서성거리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³⁴⁾

33) ‘서성거리다’는 ‘왔다 갔다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행위자가 한 장소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성거리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34) 우연히 만나 잠깐 언쟁한 것이라면 스토킹행위로서 접근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수원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노950 판결.

- 다만, 상대방등의 주거나 그 부근임을 이유로 하여 서성거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행위자의 여러 권리를 제약하는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⁵⁾

35) 행위자와 상대방등의 주거 등이 가까울수록 행위자의 통행을 더 크게 제약하게 될 것임.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을 차량으로 배회한 것을 스톱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에게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219·2022고합273(병합)·2022고합328(병합)·2022고합464(병합) 판결.

2) 안 제2조제1호 아목: 기타 그 밖의 행위

□ 안 제2조제1호 아목은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충적 성격의 포괄조항을 둠으로써,³⁶⁾ 현행법에서 예기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현행법의 체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조치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적인 성격의 포괄조항을 두어 스토킹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됨.

36)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열거하면서도, 포괄조항을 둠으로써 열거되지 아니한 유형의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독일 「형법」 제238조).

□ 다만, 스토킹 행위 개념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이 되므로,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안 제2조제1호 아목은 “기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범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독일 형법과 포괄조항을 도입하려고 한 기존의 법률안이 ‘그 밖에 각 유형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 중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기존에 명시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제한하고자 한 것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안 제2조제1호 나목: 서성거리는 행위

- 법원행정처는, ‘서성거리는 행위’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중 ‘상대방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안 제2조제1호 아목: 기타 그 밖의 행위

- 법원행정처는,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할 경우 그 행위 유형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